

위험성평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 오 병 선



1. 위험성평가 도입과정과 필요성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선진외국의 추진 사례와 성공요인,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위탁연구를 하면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는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사업장에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누락됨이 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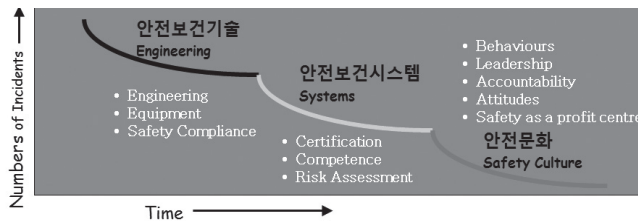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KOSHA 18001)이나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서도 위험성평가는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법적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함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를 아무리 잘 했다고 주장 하더라도 평가를 실시한 대상설비나 작업에 대해 법적인 미준수 사항이 지적된다면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평가결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의 의무적 실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시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항에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용어의 정의(개념), 절차와 방법,

평가시기, 인정기준, 산재예방요율제, 지원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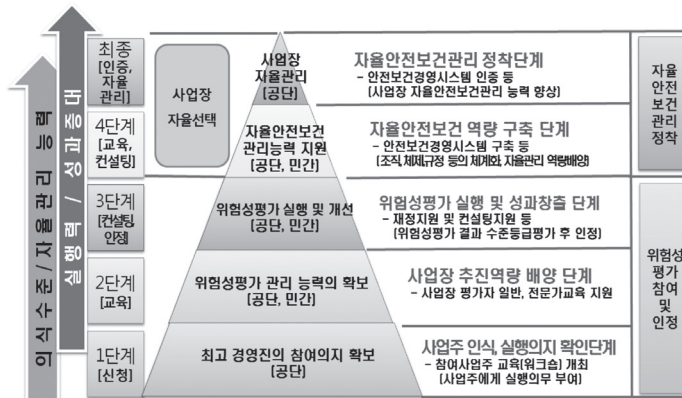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하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도입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이유는 무엇일까? 요약 설명하자면 첫째,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하여 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으며, 두 번째, 산업과 고용구조의 변화로 위험의 질적·양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노·사의 새로운 이슈, 즉 근로자는 안전보건을 인권 및 근로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손실(Loss)을 최소화하는 안전보건활동 방식(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발생요인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활동)으로 접근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였다.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위험성평가 시행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한국형 위험성평가 모델’을 체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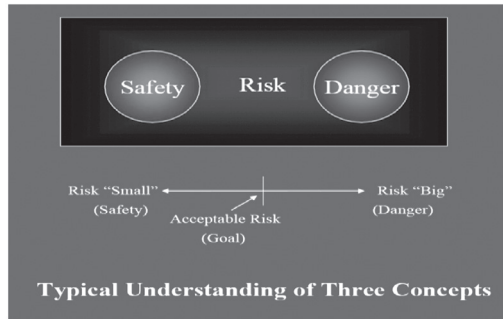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형 위험성평가 모델

2. 위험성평가의 현황

안전의 의미는 위험하지 않은 것 또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안전한 상태란 위험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낮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험 수단과 통제가 벗어나면 바로 위험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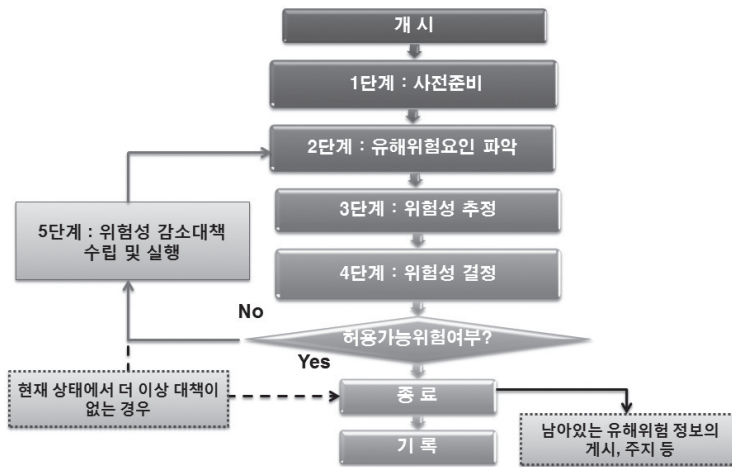


<그림 3> 개념의 이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개념과 절차,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Risk)은 재해의 발생가능성(확률)과 재해 결과(심각성)의 조합된 개념이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눈에 보이는 위험성 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확인하고 평가 한다는 뜻이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것부터 확실하게 예방 대책(감소 조치)을 세우는 절차과정 전체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림 4> 위험성평가 절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1996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1999년부터,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은

2012년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유해위험요소가 누락되거나 정확한 위험성평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되어 미흡한 내용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업환경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위험성평가를 위한 제언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가 실현되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기관, 사업장 등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면관계로 사업장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방법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위험성평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평가는 대상설비와 작업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와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이때 설비의 운전조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표준서와 안전수칙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유해위험성의 누락 여부와 불충분한 내용은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과 작업관련성 유해성 등 보건의 측면의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는 위험성평가 결과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전달하여 알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는 위험성평가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계나 설비가 도입되기 전에, 작업공정이나 사용·취급물질이 변경될 경우, 작업자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임산부, 외국인근로자 신규 투입 등), 사고가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상황이 되면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추가로 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누락됨이 없이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는 업종과 근로자 규모에 상관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 어차피 법적의무를 이행하려면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3년간 할인되는 20% 산재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한 회식비로 제공하는 사업주(경영자)가 있다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올라가면서 안전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런 멋진 사업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해본다. ☺